

“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제품” 해외직구 10개 중 7개 ‘함량 미달’

-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로열젤리 함량 국내 기준에 미달 … 5종은 핵심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% 미만인 것으로 확인

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(이하 분석소)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, 7종이 국내 품질 기준*에 미달하는 ‘무늬만 로열젤리’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.

* 식품의 기준 및 규격(붙임2 참조): 로열젤리 제품 기준 10-히드록시-2-데센산 0.56% 이상

분석소는 지난 3월 ‘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’(관세율 8%)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하여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‘천연꿀’(양허관세율 243%)임을 확인한 바 있다. 이번 분석은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하여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, 함량 미달의 저품질 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.

분석 결과 국내 품질 기준 미달 제품 7종 중 5종은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,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곽재석 분석소장은 “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뿐 아니라,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을 조성할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붙임 1. 분석대상 제품 및 시험검사 결과

2. 로열젤리 품질기준 관련 법령 및 관세율

담당 부서	중앙관세분석소 분석1관	책임자	과 장	최진욱 (055-792-7320)
		담당자	주무관	심정운 (055-792-7323)

붙임1

분석대상제품 및 시험검사결과

형태	연번	물품 사진	10-HDA (%)	형태	연번	물품 사진	10-HDA (%)
화합품	1		0.05	일반제품	5		0.01
	2		0.002		6		0.04
	3		0.39		7		0.05
	4		0.10				

붙임2

로열젤리 품질기준 관련 법령 및 관세율

□ 식품의 기준 및 규격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-40호(2026. 5. 19.)]

○ 제5장 22-2항 로열젤리류

항목 \ 유형	로열젤리	로열젤리제품
10-히드록시-2-데센산(%)	1.6 이상 (건조제품은 4.0 이상)	0.56 이상

□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[기획재정부령 제884호(2022.01.01.)]

○ (별표) 품목분류 적용기준 제36번 ‘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’

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6호에 분류한다.

1)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일 것

2)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불가능할 것
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에 분류한다.

(비고) 로열젤리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이드록시 데센산(10-HDA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.08 이상인 경우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본다.

□ 관세율

HSK	호 용어	적용 세율(%)
2106.90-9091	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- 로열젤리, 벌꿀조제품의 것	A(기본세율) 8 FEU(한-EU FTA 세율) 0
0409.00-0000	천연꿀	A(기본세율) 20 W2(WTO 양허 관세율) 243